■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 · 훈련 등에 관한 기준 [별지 제10호서식]

교육 · 훈련 연기신청서

*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실명확인	처리기간 즉시

신청인 인적사항	성명	생년월일	
	전자우편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
	주소		

분야 등	기술분야	등급
	자격증 등록번호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번호	

교육기한	당초 년 월 일		
연기사유			
연기사유 해당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변경교육기한	년 월 일
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 별표 3 제3호 라목 및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 ·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교육·훈련 연기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(본인)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○ ○ ○ 협회장 귀하

첨부서류	연기사유에 관한 증빙서류	수수료 없음

유의사항

1. 건설기술자의 교육·훈련 연기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3), 나목 3) 또는 다목 3)에 따른 교육·훈련에 한합니다.
2. 건설기술자는 질병 · 입대 ·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·훈련을 연기하는 경우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 별표 3 제3호 라목 후단에 따라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·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3. 연기사유는 교육이수 기한 내에 교육·훈련을 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.
4. 대리인 신고 시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인(신청인) 및 신고인의 신분증(사본 가능)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
대리신고인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연락처

본인확인	방법	확인자	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